

20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 ☐ 선정규모: 45개 기업 내외
 -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2 신청대상

- ☐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① 전문기업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부·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④ R&D역량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¹⁾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²⁾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¹⁾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 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²⁾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20. 6. 1.(월) 09:00 ~ 2020. 6. 11.(목) 18:00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內 온라인 신청

○ (접속경로)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강소기업 100 신청

* 신청 서류: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원본 서류는 추후 현장평가 시 확인·제출)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작성 양식) www.kibo.or.kr → 사이버영업점 → 강소기업 100 신청
→ 강소기업 100 관련 작성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붙임 1)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작성분량은 30매 이내로 제한함)(붙임 2)

○ 첨부서류

① 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 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② 주주명부 1부

③ 재무제표 (최근 3개년)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붙임3)

*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제출 생략하고 "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업로드

**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아 스캔파일 업로드

⑥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서* (붙임4) (해당기업에 한함)

* 신청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가 있는 대·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신청품목 구매와 관계 없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추천서는 현장실사 및 검증을 거쳐 추천 제외(해외 글로벌 기업도 추천 가능하며, 임의양식으로 추천)

** 추천기업은 평가 시 우대 적용

⑦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가능)

4 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 추진 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기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20. 05. 06.
↓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 온라인 신청)	'20. 06. 01. ~'20. 06. 11.
↓		
서면평가	▶ 대상기업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약식기술평가 실시	'20. 6월중
↓		
현장평가	▶ 1차 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선정심사 실시	'20. 7월초
↓		
심층평가	▶ 현장평가 실시 기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평가 실시(비대면)	'20. 7월중
↓		
대국민공개심사	▶ 공개 PT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20. 7월말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 (주요내용) 강소기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적격 기업 선별, 기본적인 기술성 검증
- (평가방법) 신청자격 요건 검토 및 온라인상에 입력한 기술력 점검 사항과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토대로 약식기술평가 실시

□ 심층평가

- (주요내용) 기술혁신 목표 및 이행계획의 타당성 등 기술혁신전략과 이의 수행능력을 평가 (현장조사 + 전문가 심층토론 평가)
- (평가방법) 현장평가단이 기술혁신전략평가, KTRS 기술평가를 실시 하고, 6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층평가위원회가 심층토론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 선정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초화학, 기계금속, 자동차

<기술혁신전략 평가 항목>

구 분	평가항목
개발기술의 중요성 (30)	① 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관성
	② 미래 신산업과 기술의 연관성
	③ 국내 기술개발의 시급성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기술개발 전략의 타당성 (30)	③ 글로벌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TRL)
	④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전략 * 빠른 기술개발, 기술혁신의 공유.확산을 위해 대학.연구소, 가치사슬 상 기업 등과 협력하여 R&D역량(기술,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을 연계.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의 계획과 정도를 평가
	⑥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술사업화 가능성 (30)	⑦ 시장진입 가능성
	⑧ 수요처 확보의 안정성 * 수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추천기업의 경우 상위 평가
경제적 성과 (10)	⑨ 생산품목의 수입대체 전망, 수출 전망
	⑩ 생산품목의 매출.고용 신장률 전망

* (핵심전략기술) 추후 공개 예정

<기술평가시스템(KTRS) 평가 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경영주 역량	기술 수준	동업종경험수준	기술성	기술완성도 및 확장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지식수준			디자인의 완성도
		기술이해도			기술의 자립도
	관리능력	기술인력관리	시장성	시장현황	기술적 파급효과
		경영관리능력			목표시장의 규모
		기술경영전략			시장의 성장성
기술성	경영진 인적구성 및 팀웍	경영진의 전문지식수준		경쟁요인	경쟁상황
		자본참여도			법.규제 등 제약/장려요인
		경영주와의 관계 및 팀웍			인지도
	기술개발 추진능력	기술개발전담조직		경쟁력	시장점유율
		기술(디자인)인력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성
	기술개발 현황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사업성	제품화역량	생산역량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품질관리 역량
		연구개발투자			투자규모의 적정성
	기술혁신성	기술의 차별성		수익전망	자본조달능력
		디자인의 우수성			마케팅역량
		모방의 난이도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투자 대비 회수가능성
		트렌드의 부합도			

☐ 최종평가 (대국민 공개심사)

- (주요내용) 공개발표 및 평가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소100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
- (심의방법) 공개 발표평가 결과 및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서, 강소기업 선정평가표, 기업의 사회환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소기업 최종 선정평가를 심의
- * 분야별 국민평가단이 참여하여 평가의견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선정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5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 졸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된 경우

□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 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 연계 지원	R&D역량 제고 사업	최대 55백만원(6개월)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년)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 (통상금리 2.0~2.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투자형 R&D	최대 40억원 * 민간 매칭금액 포함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강소기업 전용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및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의 작성 분량은 30매 이내로 제한하며, 작성 분량을 초과할 경우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첨부가 불가피한 자료 제외)
- ☐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강소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8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홈페이지) 예정
- ☐ 지역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예정

(붙임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신청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강소기업 [] 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 강소기업/[] 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80g/㎡)]

접수번호		접수일	2020년	월	일
------	--	-----	-------	---	---

기 술 혁 신 성 장 전 략 서

(강소기업 100 선정 用)

품목(기술)명						
특허등록번호 (신청품목 관련 핵심특허)						
품목(기술)유형	소재		부품		장비	
6대 핵심분야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HSK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	HSK(6~10자리)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위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 선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업체명:

대 표: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작성자성명		직위		연락처 (H.P)		TEL)		E-mail	
-------	--	----	--	-----------	--	------	--	--------	--

- 본 기술혁신성장전략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 대상기업이 작성하는 것으로, **선정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SK코드(10자리)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코드로 관세청에서 확인, 10자리에 해당하는 HSK코드가 없다면, 최소 6자리까지 대체 기재
- 평가를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정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담관리기관(기보)은 강소기업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한 기술혁신성장 전략서와 평가자료는 추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등 업무추진을 위해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담관리기관(기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강소기업 선정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작성에 애로가 있는 경우 전담관리기관(기보)에 문의하시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 기 업 경 영 현 황

1. 개 요

기업체명 (영 문)		대표자 (영문)		E-mail(대표자)	
사 업 장	구분	주소			전화번호
	본사	1)			연 락 처
	주사업장	2)			
	기타 사업장	3) 외 개			설립일자
업종명/ 업종코드		/			
품 목 명		용도 및 특성			
상장구분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기업형태 등록() 벤처기업() 외감() 외국인투자() 전문경영인()			
작성 요령	▶사업장 : 규모순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기재(3개 초과시 마지막주소 말미에 “외 ○개” 기재) ▶본사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 기재 ※공부상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함께 기재:[예시] 공부:사하구 장림동 469-3, 실제:사하 신평 474] ▶주사업장: 주요 사업장을 기재하며, 본사와 주사업장이 같을 경우 작성 생략 ▶품목명: 기존 생산(판매)품목.상품(서비스)이 있는 경우 품목기재(창업후 기술개발중인 경우 예정품목 기재) ▶업종명 / 업종코드 : 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업종코드(5자리) 기재				

2. 연혁

연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상호.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작성 요령	▶법인기업은 법인 설립후의 자본, 대표자 등 변동상황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증자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증자분(유,무상증자)이 있을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

작성 요령	▶ 법인기업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대표이사(수인인 경우 전부 기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기재 실제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경영자와의 관계만을 기재(예시 : 처, 형, 제, 처남 등) ○ 등기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단순주주의 경우 직위.담당업무는 기재생략 및 주요경력 란에 “비상근” 기재 ▶ 개인기업 : 대표자(수인인 경우 전부 기재), 실제경영자에 대하여 직위등을 확인 기재 ○ 근속연수는 동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재 ○ 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분야 담당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기재 ▶ 소유주식금액(법인기업만 작성) :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작성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단, 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 상장기업은 당기말 기준) 및 점유비를 기재(주주수가 난을 초과할 때는 “기타 ○명”으로 기재) ○ 시가.액면가 : 상장기업(거래소, 코스닥, 제3시장)의 경우 기준일 현재 종가와 액면가를 기재
----------	--

Ⅱ. 영 업 상 황

1. 최근영업상황

(단위:백만원)

매출 (수출) 실적 (현재)	(천불)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수출) 실적 (현재)	(천불)
수주 (L/C) 액 (현재)	(L/C : 천불)

작성 요령	▶ 최근 매출(수출)실적, 수주(L/C)액 :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작성일 또는 최근 월말 현재 기준으로 기재
	○ L/C보유현황 및 수주액은 신용장 및 order(계약서)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 기재
	▶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수출)실적 : 매출(수출) 실적 중에 소부장 분야 매출액 금액을 기재

2. 매 출 현 황

(단위:백만원)

기 간		2017년	2018년	2019년
품 목		~	~	~
계(수출실적)		(천불)	(천불)	(천불)
반기별 실적	상반기	(천불)	(천불)	(천불)
	하반기	(천불)	(천불)	(천불)

작성
요령

▶ 당기 : 결산확정 여부에 불구, 평가신청일의 직전회계년도(기중에 영업이 개시된 경우 동 기간을 표시)

(예시1) 설립:2017. 9. 3. 평가신청:2020. 3. 3. ⇨

2017. 9. 3 - 2017. 12. 31

2018. 1. 1 - 2018. 12. 31

2019. 1. 1 - 2019. 12. 31

(예시2) 설립:2019. 7. 8. 평가신청:2020. 3. 3. ⇨

2019. 7. 8 - 2019. 12. 31

▶ 품목별 비율 큰 순서대로 기재(상품매출·용역수입이 있을 경우 구분기재) 및 품목별 구분 곤란시 합산 기재가능(품목별 매출실적의 합계액은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함)

▶ 수출실적에는 외화금액을 기재하되, 원화는 합계에 포함 기재

3. 주요거래처

(단위:백만원)

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간거래액	주요품목	거래 기간	구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간거래액	주요품목	거래 기간
매 출 처	(- -)				외 주 가 공	(- -)			
	(- -)					(- -)			
	(- -)					(- -)			
	계		약 개업체			계		약 개업체	

작성 요령	▶ 당기말(년도 중 창업기업은 최근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 매출처/외주가공 : 거래금액 큰 순서로 기재(거래처수가 난을 초과할 때에는 기타로 표시)
	○ 합계액은 각각 당기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 외주가공비와 일치
	○ 수출의 경우상대 국가별로 원화환산 구분 기재 및 "거래기간"은 작성일 기준 년단위로 절사하여 기재
	○ 외주가공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외주가공비를 입력
	▶ 임가공업, 용역업 등의 경우에는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란의 작성을 생략 가능

Ⅲ. 기 술 혁 신 성 장 전 략(생산 또는 개발중인 기술)

1.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 방법	☐ 단독 ☐ 공동
개발(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개발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 여 ☐ 부	
권 리 구 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 ☐ 프로그램저작권 ☐ 기타 ()		제품화 단계	☐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 시제품 제작 단계		
권리상태	☐ 출원중 ☐ 등록					
등록(출원)번호						
작성 요령	▶계획 기술(사업)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 작성 ▶개발소요자금 : 개발기간중 기투입된 자금과 향후 투입될 자금을 포함한 총개발자금을 기재					

2.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기술)의 내용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1) 기술 성장 전략

(가) 품목(기술)의 개요

-
-
-
-

(나) 품목(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

-
-
-
-

(다) 핵심전략기술 분야 해당 여부 및 연관성

-
-

(라) 기술개발필요성 및 적정성

-
-
-
-

(마) 국내외경쟁사 품목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
-
-
-

(바) 기술성숙도(TRL)

-
-
-
-

(사) 산학연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

-
-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별표1
기술유형별 기술성숙도(TRL)의 정의

TRL 단계 ¹⁾			단계별 정의
기초연구	1	【기초실험】 기본원리발견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개념정립】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3	【기본성능검증】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
	4	【부품/시스템 성능검증】 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제품	5	【장치/시스템 시제품 제작】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 확정된 공법/재료/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6	【시제품 성능평가】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 파일럿 규모(수개~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생산수율, 불량률 등 제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실용화	7	【시제품 신뢰성평가】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제품을 현장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
	8	【시제품 인증】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양산	9	【사업화】 상용제품생산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1) TRL 단계별 정의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시장동향 및 파급효과

(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단위:백만원)

연도별(억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선도기업명
시장	국내						
규모	해외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
-
-

(나) 국내외 동업계 현황 및 경쟁 상황

-
-
-
-

(다) 주요 수요처 매출 실적 및 수요 전망

-
-
-
-

(라) 경제적 파급효과

-
-
-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3) 사업화 전략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가) 개발완료 및 제품화 시기

-
-
-

(나) 설비 도입 및 양산 착수

-
-
-

(다) 매출전망

-
-
-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4) 판매 및 계획 전략

(단위:백만원)

※소재·부품·장비관련 품목 중심으로 작성

(가) 판매 계획

품목명	판매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내 수	내 수	수 출	수 출	수 출	
판매 계획 당해 기술 사업 관련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기타 시장판매										
계												
마케팅	전담팀(조직)보유여부					전담인력수						
<추정근기>			(연도별 매출추정 및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인 근기를 기반으로 작성)									
작성 요령	▶판매계획 : 향후 5개년간의 당해 기술사업 관련 매출을 판매처 업태(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기타시장판매)별로 나누어 기재 및 판매년도 별로 내수 및 수출로 구분 표시함.											

(나) 판매 전략

○(예상)판매처

○(예상)품목 수요

○홍보 및 판로확보 전략

○수출 전략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IV. 기 술 개 발 현 황

1. 기술개발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전담조직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기술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기술개발연구실 (기업자체운용)	
인정일자							
담당분야	직 위	성 명	연령	최종학교 및 전공	입사년월	보유자격증	해당 기술분야 근무년수
작성요령	▶담당분야 :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내용 중심으로 표시(예: 책임자, 설계요원, 가공요원 등) ▶기술개발인력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2. 기술개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년월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분야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고등학교							
	년 월	년 월	대학교	대학교			과				
	년 월	년 월	대학원	대학원			과(세부전공:)				
주요 경력	부 터	까 지	근무처		업종		담당업무		최종지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보유 자격증 및 수상경력 등											
작성요령	▶기술개발책임자의 경력사항을 기재 ▶대표자, 공동대표자, 실제경영자가 개발책임자인 경우 작성 생략										

3. 기술개발실적(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함한 기업의 전체 기술개발 실적)

(단위: 백만원)

(1) 개발 과제 및 내용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 기간	개발 수준	개발 비용	매출 규모	수상/취득권리/인증	기술상용화 여부
작성 요령	▶개발수준 : 시제품제작 단계 또는 제품양산 여부에 따라 “시제품” 또는 “양산”으로 기재 ▶수상/취득권리/인증 : IR52장영실상, 지식경제부 10대신기술상, NET/NEP, 정부 R&D개발성공판정 여부 등 기재 ▶보완사항 및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최대 20개까지 작성하고, 추가적인 자료는 별지에 따로 작성 요망

(2) 회사보유 기술권리

(회사 보유 중인 모든 산업 재산권 관련)

(가) 회사보유 산업재산권 (현재 생산중이거나 향후 생산계획이 있는 품목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규격표시허가(KS등), 기술제휴 등의 건수 및 내용 기재, 해외특허도 기재)

산업재산권 현황	특허		실용신안	
	☐ 등록 ()건	☐ 출원 ()건	☐ 등록 ()건	☐ 출원 ()건
	☐ 디자인등록 ()건		☐ 프로그램등록 ()건	
	☐ 상표권등록 ()건		☐ 기술임치증 보유 ()건	
	☐ 기타() ()건			

산업재산권 내용 입력						
권리종류	등록구분 (등록/ 출원)	등록번호	기술내용	등록(출원) 일자	권리자	발명자

*최대 20개까지 작성하고, 추가적인 자료는 별지에 따로 작성 후 제출

(나) 회사보유 각종 권리 (영업을 위해 획득한 각종 품질규격인가, 허가, 면허증의 종류 및 허가번호 등을 기재)

품질 규격 및 인허 가	국내공인규격	건	
	국외공인규격	건	
	기술인증	건	
	품질관리수준	건	
	기타	건	
작성 요령	▶국내공인규격: KS, 전, 검, Q, K 마크 등 ▶국외공인규격: UL, JIS, ISO9000시리즈, ISO14000시리즈, QS9000시리즈, CCM CSA 등 ▶기술인증: EM, NT, KT, IT 등(유효기간 내) ▶품질관리수준: 싱글PPM, 100PPM 등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 등		

4. 기술개발용 연구기자재 및 생산시설 보유현황

(단위:백만원)

용도(개발/생산)	시 설 명	수 량	장부가액	비고
합 계				
작성 요령	▶최근월말 현재(부득이한 경우 당기말 현재) 보유중인 주요 기계장치, 구축물, 공기구 등(건설업의 경우 주요건설장비 등)을 관련장부와 일치토록 금액,규모 등을 기준으로 주요 순으로 기재 ▶중요도 순으로 최대 10개까지 작성 요망			

(붙임3)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대표이사 귀하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소재지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소재·부품 또는 장비명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HSK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원화)	합계
1						
2						
3						
4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 (B/A)				%

이 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기업 대표자에게 있으며, 검토기관의 책임은 이 명세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상기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가 소재·부품 및 그 장비 매출을 기업회계기준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 격 증	한국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검토기관	(직인)		
검토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번호)	

첨부서류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 작성요령: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스캔파일을 홈페이지에 첨부서류로 업로드

(붙임4)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추천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추천서

1.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	
본사 소재지	(Tel)		
사업장 소재지	(Tel)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개업)일자	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제품		

2. 품목(기술) 개요

품목(기술)명							
품목(기술)유형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기타
HSK code (국제통일상품분류)	HSK(6~10자리)						

3. 기술개발 및 사업계획

기술개발 구분	국산화(수입대체)		신규개발		기술(공정) 개량		
사업화단계	연구개발	사업화준비		양산		기타	

4. 추천의견

* 대·중견기업 소속 계열사는 추천 불가

20 . . .

추천기관 : **대기업·중견기업(직접추천)** (인)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5)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숨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2 17125 171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101 211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 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 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 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13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동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26111 26112 26121 26129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 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 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 축전기	26291
	전자 저항기	26292
	전자카드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4
	전자 감지장치	262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26299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26322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1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27193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4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5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9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2730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302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9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40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변압기	28112
	방전 램프용 안정기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축전지	28202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8520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유압 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기체 여과기	29174
	액체 여과기	29175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76 29180 29191 29192 29193 29194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4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동차 차체용 부품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부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부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부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부품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114 31202 31321 31322 31910 3192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9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2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3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